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치과 지침

본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선택적 시술을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치과 치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자, 치과 실험실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계약 담당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인물(행정, 사무원, 청소용역, 유지 보수 또는 자원 봉사 직원)을 치의 관리 인력(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으로 지정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치과 치료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활동의 안전 또는 핵심 기능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치과 방문 및 치료 중 관리 등) 개인 간에 6피트 거리를 확보합니다. ✓ 필요한 경우 모든 대기실 좌석 이용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하여 모든 방향으로 개인 간 6 피트의 거리를 준수하도록 합니다(의자 간격 두기, 교대로 의자에 앉도록 안내 등). ✓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하고,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표지와 시스템(공간 사용 시 해당 내용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중요하지 않은 대면 모임(회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C 지침에 따라 다음의 치과 치료를 실시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지 않은 모든 치과용 소모품과 기구를 적절하게 커버를 씌워 보관해야 합니다(수납장, 서랍, 캐비닛 등). • 환자의 공간을 마련하여 필수적인 평균 조치를 한 장비만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노출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모든 소모품이나 장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에어로졸을 사용하는 절차를 제한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하고(치과용 핸드피스, 공기/물 주사기,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피하기 등) 손을 사용하는 기구 및 최소한 침습/외상성 수복 기법을 우선 순위로 사용합니다. 에어로졸을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포 핸드드 치과 치료, 4손 치과, 호흡인 섹션, 덴탈 댄, 시술 지원을 위한 인원 제한 등)를 실시합니다. •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유지하여 청정 지역부터 오염 지역까지 적절한 공기 흐름을 확보합니다. 추가 난방, 환기 및 냉방(HVAC) 설비 및 적절한 공기 정화에 대한 정보는 CDC 지침 및 OSHA 권고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가능한 한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동시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의 환자로 치과 진료를 제한하십시오. ✓ 테이블 또는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구역(건강 선별 스테이션, 휴게실, 접수처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커를 표시합니다. ✓ 환자에게 가능한 한 동반자와의 치과 방문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 방문자가 지정된 약속 시간까지 외부 또는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합니다.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치과 지침

본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선택적 시술을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치과 치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자, 치과 실험실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계약 담당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인물(행정, 사무원, 청소용역, 유지 보수 또는 자원 봉사 직원)을 치의 관리 인력(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으로 지칭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치과 치료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예약을 최소화하여 시설 내 개인의 밀집도를 완화합니다. ✓ CDC 지침 및 OSHA 권고사항에 따라 비응급 상담의 경우 원격 치과 진료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병원 내 치료를 최소화합니다.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 치료 중을 제외하고 환자 및 동반 방문객이 치과 시설 내(엘리베이터, 로비, 대기실 등) 항상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허용되는 커버에는 코와 입을 단단히 덮는 최소한의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또는 수술용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 필요한 PPE를 적절하게 구비하고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하고 적절한 PPE를 제공합니다. ✓ DHCP는 에어로졸을 생성하지 않는 치과 치료를 실시할 때 수술용 마스크, 눈 보호, 장갑 및 보호복 등 OSHA 기준에 따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로졸을 사용하는 치료의 경우, 공급자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국가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가 인증한 일회용 N95 또는 높은 등급의 인공 호흡기, 눈 보호 장비(고글, 페이스 쉴드 등), 장갑 및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 DHCP가 환자를 만나기 전후의 PPE 탈착 및 교체에 대한 정책을 세웁니다. DHCP는 PPE를 착용하고 탈착할 때 CDC 권장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 마스크나 N95 인공 호흡기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PPE를 벗을 때 장갑을 끼지 않고 마스크 바깥쪽을 만지면 안 됩니다. PPE를 사용하기 전후에 항상 손 위생을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사무직과 같이 환자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항상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방문자에게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환자가 적절한 페이스 커버링 없이 치과 시설에 도착한 경우,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페이스 커버를 제공합니다. 혹은 환자에게 일정을 재조정하여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여 재방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시설(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출입/퇴장하기 전 공용 공간에서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상기시킵니다. ✓ 터치리스식 비누/수건 디스펜서 및 쓰레기통과 같은 터치리스 기기를 설치합니다.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치과 지침

본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선택적 시술을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치과 치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자, 치과 실험실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계약 담당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인물(행정, 사무원, 청소용역, 유지 보수 또는 자원 봉사 직원)을 치의 관리 인력(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으로 지정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치과 치료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 ✓ DHCP는 CDC 공기 중 입자 생성 및 행동에 대한 지침(CDC Guidance on Generation and Behavior of Airborne Particles)에 따라 치과 치료에 사용하는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기 전 전염 가능성이 있는 비말이 충분히 공기 중에서 낙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치과 치료 완료 전 최소 15분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 수술실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직원은 최소한 장갑, 수술용 마스크를 비롯해 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 등 안구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비누,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근무지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 공용 구역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구, 출구, 대기 구역과 같이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접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시설 및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병원 등급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 및 OSHA 권고를 참조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이 잦지만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할 수 없는 물건(장난감, 잡지, 펜 등)을 제거합니다. ✓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졌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손 살균 스테이션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치과 지침

본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선택적 시술을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치과 치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자, 치과 실험실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계약 담당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인물(행정, 사무원, 청소용역, 유지 보수 또는 자원 봉사 직원)을 치의 관리 인력(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으로 지칭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치과 치료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엘리베이터, 대기실, 출입구, 배지 스캐너, 화장실 손잡이, 문 손잡이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PPE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치과 시설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 음식과 음료의 공유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운영을 재개하거나 확대하기 전 모든 직원에게 새로운 관행 및 책임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훈련 계획을 세웁니다. ✓ DOH 코로나19 표지와 일치하는 사인을 치과 시설 전체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적절한 페이스 커버 착용, 손 위생 및 기침 에티켓 준수, 코로나19 증상 보고 등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 시설 내에서 DHCP에 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근무지 내에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코로나19 조치 및 관행에 대한 의사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합니다. ✓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표지 등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치과 지침

본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선택적 시술을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치과 치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자, 치과 실험실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계약 담당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인물(행정, 사무원, 청소용역, 유지 보수 또는 자원 봉사 직원)을 치의 관리 인력(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으로 지칭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치과 치료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있거나 닛 시간 동안 아플 경우, DHCP는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업무 개시 전 DHCP, 환자 및 방문자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밀접한 접촉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 확진 사례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자에게 의료 및 테스트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반드시 이러한 선별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보고를 받을 당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의 치과 치료는 만약 가능하고 환자가 위급한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해야 합니다. 응급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CDC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임시 권고(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commendations)에 따라 수행하거나 환자를 돌보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통제를 준비한 시설을 참조하십시오. ✓ 활동, 위치, 근무 시프트,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모든 설문을 수령하여 검토할 의무를 맡기고 이러한 책임자에게 또한 어떤 사람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경험할 경우 이들의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시설 내 타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모든 DHCP 및 방문객의 일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 포함되는 환자 및 방문객 정보 제공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최대한 원격 선별 조치(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를 실시합니다. ✓ DHCP가 근무 시간 이외를 포함하여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CDC의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마스크를 포함하여 고용주가 제공한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